

중국 보안서비스산업의 운영실태 및 제도정착 방안

Operation Statu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Industry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Methods

Sangchul Lee^{a,*}

^a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University of Yongin, 470 Sanga dong, Yongin 449-714, Republic of Korea

ABSTRACT

With the changing safety services and social order systems accompani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Chinese economic reform,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in China is growing daily and related problems are increasing. For the Chinese security service market to be activated, the monopoly of security services by the public security agencies must be removed. In additi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ansion, and applications of safety and crime prevention technologies regarding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exhibition, sales, culture, sports, commerce activities, combinations of safety technologies and crime prevention processes, the provision of relevant technical operations, and the expansion of security service areas are required.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rights,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management rights of security companies must be separated, the security headquarters must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for optimization of various resources solely by market needs, and their rights and affiliation relations must be clear. Besides, the competitiveness of security companies in the security service market must be enhanced by unifying the business management, and optimizing and sharing their resources.

The security service ordinances of China that have been implemented now must be applied realistically, methods to activate the true market economy for security services must be researched, and various ordinances related to security services must be realigned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services.

Finally, for the mu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urity services, the public security agencies must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and the status of security service providers in crime prevention and social order maintenance. They must establish partnership relations with each other beyond the unilateral dir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security services and drive with positive attitudes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which is still in its infancy

KEYWORDS

public security environment
 Chinese economic reform
 security service industry
 public security agency
 security service provider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역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보안서비스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

치안환경 개혁개방 보안서비스업

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법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법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 시켜야 한다.

공안기관
보안회사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31-8020-2873. Fax. 82-031-8020-2882.
Email. lsc0707@korea.com

ARTICLE HISTORY
Recieved Nov. 26, 2014
Revised Dec. 01, 2014
Accepted Dec. 21, 2014

1. 서론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환 되었지만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게 진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항상 공권력의 대표자인 공안이 활약하였는데 오늘날 와서 자체의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 치안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사전예방활동에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Choi,2013).

중국의 보안서비스는 1984년에 광둥성 심천시에서 첫 보안서비스회사인 쉰커우(蛇口)구보안서비스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경제특구에 진입한 외자기업에 대한 안전서비스로부터 발단 되었고, 되었다. 그동안 보안서비스 시장은 국가 GDP의 발전속도를 능가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초기의 단순한 인력방범의 미흡한 수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술방범 업무의 도입까지 거듭되는 발전을 이루었다. 이같이 정부에서는 치안행정에 있어 보안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Choi, 2013).

2003년 11월, 북경에서 열린 제20기전국공안회의에서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주영강(周永康)은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공안전서비스의 산업화를 추진시키며, 사회치안유지와 공공안전수호에 대한 작용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05년 12월에 있는 공안부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인 마유아(馬維亞)는 “보안서비스가 사회화, 시장화 운영을 실현하려면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단지 시장도입조건에 대한 심사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제의하였다.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시의 승낙을 근거로 중국은 이미 2006년에 보안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을 실행하였고, 민주와 법제의 발전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의 관리감독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Choi, 2013).

하지만 중국 보안산업은 진보와 발전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속출하였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의 민간경비와 비교할 때 아직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보안시장은 이미 WTO회원국에 개방되었지만 전통체제와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완전한 자유 시장에 의한 운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丰静暖, 2008).

동시에 점차적으로 성숙되고 있는 시장화 경제 패턴도 이 업종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의 새로운 수요,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기 위하여 광둥, 심천 등성과 시에서는 연이어 일련의 지방성 보안관리 조례와 조치를 제정하였다. 2008년 2월 25일, 국무원 법제사무실에서는 인민일보, 신화넷과 중국정법법제정보넷을 통해 “보안서비스관리조례(초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보안 입법사업은 정식으로 실시단계에 들어섰다. 업계 내외에서는 오래 동안 기다리던 “조례”의 발표를 둘러싸고 고도의 관심과 열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300만 여명의 물류업보안, 기업보안 가운데서 일정한 조건과 자질을 갖춘 단위나 개인은 모두 합법적인 신분으로 보안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林松, 2008).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개혁이후 발전하는 중국의 보안서비스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장경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보안서비스 제도정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중국 보안서비스의 기능과 분류

2.1 중국 보안서비스의 기능

중국은 WTO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보안서비스산업을 개방하라는 유럽 국가들의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독자적인 관리감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록 개혁개방에 힘입어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체제, 법률, 교육, 산업화 등의 면에서의 부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발전 속도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안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다(沈惠章, 2008).

보안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보안서비스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범죄예방이라는 안전상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안서비스회사에서 파견한 보안원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주요임무로 행하지만 특정

된 조건하에서는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사후적 대처(현행범죄 제지, 범죄자 송치 등)도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중국의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의 보안산업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더구나 WTO회원국에 대한 개방과 「보안서비스관리조례」의 출시로 인하여 중국 보안산업은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丰静暖, 2008).

보안서비스의 일차적 기능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전서비스는 내적·외적 위험(risks)과 위해(dangers)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혹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서비스는 의뢰인인 고객한테 받은 보수만큼 반대급부 된다. 보안서비스의 고객은 일반국민, 사업단체 및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이 될 수 있는데, 각 대상이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서비스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보안서비스와 공안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role)과 기능(function)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이 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된 목표라고 볼 수 있다(丰静暖, 2008).

일반적으로 보안서비스는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또는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하여 그 활동이 사적이고 영리적인 것이어서 공공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보안서비스는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예방 및 방지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공공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안서비스는 사전적·예방적 활동이 주가 되고, 공안은 이러한 일반적 기능 이외에 질서유지, 사회봉사 임무, 치안행정과 형사사법 기능 등이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 안전서비스는 주로 보안서비스회사가, 사후적·사법적 법 집행 활동은 주로 공안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2 중국 보안서비스의 분류

보안서비스는 제공되는 안전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대체로 인력방법(人力防範), 실체방법(實體防範, 物防), 기술방법(技術防範) 등 3가지로 나누는데 이는 모두 안전방법(安全防範)의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인력방법은 인간의 감응기관(눈, 코, 입 등)을 이용하여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을 탐지 및 발견하여 신속히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경고, 반격, 장애물 설치 등 수단을 통하여 위험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제지하는 활동과 수단이다.

인력방법의 방법으로는 수호, 순찰, 보디가드와 혼잡지역이나 행사장의 질서유지 등이 있다.

실체방법은 반응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활동 혹은 물리적 안전장치이다. 현대적인 실체방법은 단순한 물리적 방벽을 이용한 피동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최신 기술적인 수단으로 실체방벽의 파괴될 가능성을 줄여서 시간지연을 늘이고, 또한 실체방벽 자체가 탐측과 반응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기술방법은 인력방법과 실체방법의 기능상의 확대와 보충이다. 기술방법은 하나의 수단으로 인력방법과 실체방법과 융합되어 탐지 및 검측, 지연, 반응 등 3개요소의 기술적 함량을 부단히 높여 예상의 목적을 이룬다. 이는 기계의 도움에 의하거나 기계와 사람의 합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IDC Korea, 2004).

그리고 보안조례에서는 보안서비스의 대체적 업무범위만 규정하였지만 「보안서비스 운영규칙과 품질 통제」에서는 보안서비스의 업무내용을 문지기서비스, 수호서비스, 순찰서비스, 호송서비스, 신변보호서비스, 군중통제서비스, 기술방법서비스, 안전자문서비스 등 9가지로 확정하였다.

2.3 보안서비스 업무유형

보안서비스란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안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조직이 전문화된 안전방법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보안서비스 조례에 의한 업무의 유형을 보면,

첫째, 보안서비스회사가 보안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보안원을 파견하여 고객한테 제공하는 문지기, 순찰, 수호, 호송, 신변보호, 안전검사 및 안전기술방법, 안전자문 등 업무.

- 1) 안전방법의 사전적 의미는 준비와 보호를 완료하여 공격에 대응하거나 침해를 피면하여 보호대상으로 하여금 위험, 침해, 사고가 없는 안전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침해를 방지하는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안전방법은 서방국가의 손실예방 및 범죄예방(Loss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일종의 공안업무 이면서도 사회공공사업과 사회경제사업이다.

둘째,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가 보안원을 고용하여 본 단위의 문지기, 순찰, 수호 등에 관한 안전방법업무. 셋째, 아파트서비스업체가 보안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순찰, 질서유지 등의 업무. 두 번째와 세 번째 조항중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아파트서비스기업을 총칭하여 보안원 자체고용단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무원 공안부문은 전국의 보안서비스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은 행정구역범위내의 보안서비스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보안서비스협회는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법에 따른 자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丰静暖. 2008).

보안서비스회사와 보안원자체 고용단위를 통틀어 보안중사업체라 한다. 보안중사업체는 보안서비스관리제도, 책임제도와 보안원 관리제도에 대한 관리와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보안원의 직업도덕수준, 업무자질과 책임의식을 제고 시키고 있다. 보안중사업체는 보안원의 사회보험, 노동협정, 임금복지, 교육훈련 등 면의 합법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보안활동은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원의 합법적인 보안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보안에 충실하고 공제산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범죄활동의 예방과 규제에 있어서 성과가 뚜렷한 보안중사업체와 보안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과 기타 유관부문은 표창과 장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기관적 측면에서 치밀한 노력을 한 덕분에 중국의 대형사회활동에 커다란 치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회활동에 대한 안전 및 치안 작업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기에 대형활동의 시대에 일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중국의 보안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3. 중국 보안서비스업체 운영실태 분석

3.1 중국의 보안서비스 중사업체 설립

중국의 사회치안문제는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많은 요소의 종합이라고 본다. 사회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전 사회의 공동한 노력에 따라야 하지 단순히 경찰역량에 만 의지하면 안 된다. 보안서비스업은 사회전반과 합리적으로 결합해야 그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와의 투쟁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郭太生, 2008).

이러한 중국의 범죄로부터 치안업무를 강화화가 위해서 필연적으로 보안서비스업체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보안서비스 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3차 산업의 새로운 구성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人民日報, 2006), 이로 인해 중국 보안서비스는 이미 업체수량, 인원규모, 영역확대 등 면에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중국의 보안서비스회사는 3,000개에 달하고 보안중사자는 4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과 시큐리티 수요가 비교적 높은 지역인 광둥(廣東),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장쑤(江蘇) 등 10개 성 및 직할시의 보안서비스회사 중사자수는 4만명을 넘고 있으며, 특히 광둥성과 베이징시의 전문보안원 수는 각각 13만 5천명, 7만 6천명에 달하여 해당 지역의 인민경찰 인원수를 훨씬 넘고 있다. 예컨대 북경의 경우 인민경찰은 5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보안원은 이미 7만 6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중국에서 보안서비스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100만 위안(약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보안업체의 법인과 고급관리인원은 높은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안관련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처벌, 노동교양, 수용교육과 강제계속 및 공직과 군직 퇴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용할 전문기술인원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전문자격 요구 있을 시 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얻어야 하며, 장소와 보안에 수요 된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하고, 완전한 관리체계와 책임제도가 있어야 한다(보안서비스조례 제8조).

보안서비스회사 신청 시 관할지구시급공안기관(관할경찰서)에 신청서와 조건을 만족시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공안기관은 15일내에 심사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성, 자치구, 직할시공안기관(지방경찰청)에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공안기관(지방경찰청)은 보고받은 15일내에 심사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해서

2) 中國中央人民政府, “公安部通报我国保安工作及手机违法短信治理情况”, 2005. 12. 6(중국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 마웨이(馬維亞)의 공식기자회견 발표자료)

는 '보안허가증'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서면형식으로 통지한다.

보안회사가 지사를 설립 시 지사의 시급관할공안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보안회사의 법인대표가 변경 시 원심사 공안기관의 심사관련서류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변형등기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무장수호(특수시설보안)와 호송업무를 신청하는 보안회사는 국가의 무장수호와 호송업무에 대한 규획과 배치에 부합되어야 하며, 1000만 원(20억)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국유자본이 장악해야 한다.³⁾ 그리고 「전문적인수호및호송인원총기사용관리조례」의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있어야 하며, 국가표준 혹은 업체표준에 부합되는 전용운수차량과 통신 및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보안서비스조례 제10조).

무장수호와 호송업무를 신청하려는 보안회사는 관할지구시급공안기관(관할경찰서)에 신청서와 조례 제8조, 10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서비스회사가 무장수호 및 호송업무를 증설시 조례 제8조의 서류를 제출부 아니 하여도 된다. 심사하는 공안기관은 15일내에 심사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성, 자치구, 직할시공안기관(지방경찰청)에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공안기관(지방경찰청)은 보고받은 15일내에 심사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해서 보안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미 보안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허가증에는 무장수호 및 호송업무의 허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보안업허가증'을 취득한 보안종사업체는 이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공상등기를 하여야 하며, '보안업허가증'을 취득 후 6개월 내에 공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의 '보안업허가증'은 폐지된다. 그리고 보안종사업체의 법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변경될 시 허가발급한 공안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보안서비스회사의 설립조건에는 조례 제8조의 내용 외에 보안서비스회사의 법인대표, 사장, 부사장 등 주요관리층의 경력과 자격에 대하여 세분화 하였고 외자(外資)보안서비스회사의 조건에 대하여 명시 하였다.

보안서비스회사가 지사를 창건할 경우 설립 15일내에 지사의 관할구역 공안기관에 배치신고하고 보안원자체 고용단위는 업무개시 30일내에 관할구역 공안기관에 배치신고 하여야 한다.

3.2 보안원의 자격과 보안교육기구

보안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보안원에 대해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안조례에서는 보안원교육훈련대강과 품질통제의 따라 보안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보안서비스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안원은 18세에 도달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품행양호한 중학교이상의 학력을 갖춘 중국국민이면 보안원증을 신청하여 보안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시급공안기관의 시험과 심사에 합격하고 지문 등 인체생물정보를 남기면 보안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추출한 지문 등의 생물정보는 공안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에 따른 인원은 보안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첫째, 수용교육, 강제계독, 노동교양 혹은 3차 이상 행정구류 당한 자.

둘째,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자.

셋째, 보안원증을 취소한지 3년 미만인 자.

넷째, 보안원증을 2회 취소당한 자.

보안종사업체는 조건에 부합되는 보안원을 고용하여야 하고 보안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안원에 대한 법률, 보안전문지식과 기능훈련을 보급시켜야 한다. 보안원이 공무에 의해 상해 또는 사망 시 국가규정에 따라 공상보험대우(工傷保險待遇)를 받을 수 있고 사망되어 열사로 인증되면 국가의 열사대우를 받는다.

보안훈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훈련에 수요된 교사는 대졸이상의 학력 혹은 10년 이상의 치안관리경험을 구비해야 되며, 교육훈련 필 요되는 장소, 시설 등 교학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보안서비스조례 제32조)

보안훈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시급)공안기관에 신청서와 32조에 만족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한 공안기관은 15일내에 심사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성, 자치구, 직할시공안기관(지방경찰청)에 보고한

3) 국유자본이 등록된 자본 총액의 51% 이상 장악해야 한다.

다. 성, 자치구, 직할시공안기관(지방경찰청)은 보고받은 15일내에 심사하며 조건 만족자에게는 '보안훈련허가증' 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서면형식으로 통지하고, 무장수호 및 호송에 종사하는 보안원에 대한 훈련은 경찰학교, 경찰훈련기구에서 책임진다.

보안훈련기구는 보안원훈련교육대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보안원에 대한 법률, 보안전문지식, 기능훈련 및 도덕교육을 진행한다.

3.3 보안서비스 활동범위

보안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 기재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계약 종결 시 유관 서류는 중단 후 2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시급이상 정부부문에서 명시한 국가중요단위에 대한 보안업무는 외자, 중의합자, 중의합작의 보안회사한테 개방하지 않는다. 성(직할시, 자치구)외의 보안업무 수행 시 해당 공안부문에 배치신고 하여야 한다. 보안회사는 수요에 근거하여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보안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보안서비스 중 사용하는 안전기술상품은 품질요구에 도달하여야 하고 CCTV 등 장비는 기술규범에 따라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서비스동영상 혹은 보안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되며 유관내용을 3개월 보존해야 한다. 또한 보안활동 중에서 섭취한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고객이 요구한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중사업체는 보안원을 지시, 방입하여 공무집행을 저해하고 채무를 받거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된다(KOTRA, 2007).

보안원은 근무 시 보안제복(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서비스 표식을 몸에 달아야 한다. 제복과 표식은 군대, 경찰, 무장경찰 또는 기타 사법기관의 제복 표식과 선명한 차이를 가져야 하며, 국가보안협회에서 추천하는 양식 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안원은 근무 시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응당 정지시켜야 하며, 정지가 아니 될 경우 인근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 조치를 취하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실행하고 있는 범죄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응당 공안기관에 송취하며 경찰에 협조하여 처리한다.

무장수호 및 호송업무에 종사하는 보안원은 응당 「전문수호호송인원총기사용관리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원은 보안중사업체 혹은 고객의 위법명령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안중사업체는 보안원이 위법명령에 직행하지 않는 원인으로 보안원의 노동계약을 해고하거나 사회보험비 납부를 정지 혹은 해당 노동보수와 다른 기타 대우를 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서비스업체는 이런 경우로 인해 손해 받은 보안원에 대하여 응당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龔金紅, 2010).

3.4 보안서비스업체의 관리감독과 법적책임

공안기관은 보안중사업체와 보안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등록한 감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안업에 대한 사회적인 감독은 현급이상 공안기관에 신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직원은 보안서비스회사의 창립 혹은 다른 형식으로 보안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책임은 임의 조직 혹은 개인이 허가 없이 보안서비스, 보안서비스훈련에 종사할 경우 공안기관은 단속을 하여야 하고, 치안관리처벌을 하여야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 구성 시 형사책임이 추궁된다.

그리고 보안서비스업체는 감시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사생활을 침입한 경우 상황이 존재 시 기간 내의 정돈을 요구받고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안관리를 위반 시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범죄 구성시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집적적인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적용한다.

또한 보안원의 행위가 본 조례 제30조(보안원의 금지 행위, 위에 있음)에 해당될 경우 공안기관은 훈계를 하여야 하고 엄중한 경위가 존재 시 보안원증은 취소하며 치안관리를 위반 시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범죄 구성 시에는 형사책임을 적용한다. 보안훈련기구가 조례에서 정한 보안원교육훈련대강에 따라지 않을 경우 기간 내에 수정하게 경고하고 경위가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처벌을 가한다. 보안훈련위 명의로 사기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 혹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공안기관의 경찰이 감독·관리 중 권리남용, 직무소홀, 사리사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처분을 가하고 범죄 구성 시 형사 처분을 적용하고 국가기관 및 직원이 보안서비스회사의 창립 혹은 다른 형식으로 보안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주요, 집적적인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손해배상에서는 보안원이 보안서비스업무 수행 중 조성한 타인의 상해 혹은 사망,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보안중사업체가 배상하며, 보안원이 고의 혹은 과대한 과실의 경위가 존 재시 보안중사업체는 법에 따라 보안원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 보안서비스 법인 설립 시 법인 혹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경력이의 일정한 보안서비스 관련 학력에 대한 요구를 보안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전학력(大專學歷)⁴⁾의 인원에는 중급보안원 자격, 학사학위 대졸생에는 고급보안원 자격, 석사학위 수여받은 인원에는 보안사자격, 박사학위 소유자에는 고급보안사 자격을 대등시켜 직접 관련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 많은 높은 학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Choi, 2013).

4. 중국 보안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

4.1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

중국의 보안서비스산업은 30년 가까이 정부와 시장의 공동육성 정책을 통하여 사회영향, 시장점유, 자산이윤, 경영범위의 방면에서 많은 발전과 점차적으로 사회산업으로 형성된 범죄예방 경제적 손실 감소 사회공공안전유지를 위해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역사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현재 보안서비스산업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단일 운영 모드, 간단한 서비스 모드, 영업 이익 빈약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와서 중국 보안서비스의 서비스범위는 현재 이미 인력방법을 위주로 하고 기계경비방법을 보조로 하는 종합 보안서비스상품 계통으로 확장되고 있다. 1984년 심천 사구에서 첫 번째 보안서비스회사가 성립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중국보안업은 25년간의 발전 역사를 거쳐 왔다. 이 기간에 보안업무는 이미 단순한 인력방법으로부터 인력방법, 기계경비방법, 개를 사용하는 견방, 호송경비, 보안자문, 노무수출 등을 겸비한 전 방위 보안서비스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북경 보안서비스 본사를 예로 들면 현재 경영범위에는 보안서비스의 제공, 보안인원의 파견, 보안 안전기술 방법기재의 판매와 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Heo, 2010).

그래서 중국의 정부에서는 기존의 인력경비 서비스 모델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통합, 전면적인 경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이윤과 직원의 소득 향상, 이러한 고위험 직업은 높은 수입 산업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높은 위험, 높은 소득, 높은 비용, 낮은 이익"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가치 사슬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중국 보안서비스업은 창립할 때부터 낙후된 운영제도의 영향을 받아 모든 민영 보안서비스회사는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보안원의 인력 보안서비스 방식을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하여 보안원 인원의 증가를 보안회사발전을 검사기준으로 하여 회사매출과 보안직원 소득의 차이를 회사의 경영이윤으로 하여 장기간 인력 경비와 기술 경비는 모든 고객을 운행 단위로 분할 설립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낮은 기업수입, 낮은 개인 소득, 낮은 기술, 낮은 사회지위, 불안한 직업, 어려운 모집, 직원 이직의 증가를 초래하여 서비스 대상의 대한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郭太生, 2008).

그래서 중국의 보안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보안서비스업무회사가 사회대중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는 오랫동안 특허경영 항목에서 벗어나 보안서비스업도 반드시 엄격히 법률에서 규정한 서비스방식과 내용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부의 보안서비스 회사규범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서 규정한 보안서비스회사의 경영범위에는 기업과 사업단위, 기관단체, 주민거주 구역, 공공장소의 안전경호, 화폐, 유가증권, 금은보화, 문물, 예술품, 기타 귀중 물자와 폭발, 화학 등 위험물품의 호송 등이 있다.

4) 대학전문학과(Junior College) 학력으로 2년에서 3년까지 전문대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학력이고 4년제 학사학위보다는 한등급 낮다.

그리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법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법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안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안부의 보안서비스 회사규범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이외에 발전하는 사회의 환경과 증가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Heo, 2010).

4.2 보안서비스시장의 규칙과 질서 유지

보안사업은 시장화, 직업화, 규범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법치사회와 시장경제의 필연적 수요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으로부터 보안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보안기업에서는 응당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사람을 경영활동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일상직업 중에서 보안원의 도덕 사상과 과학문화소질을 높이는데 중시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직업에 대한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보안원의 사명감, 책임감과 단체정신을 함양하여 보안시장이 생기와 활력으로 넘치게 해야 한다.

보안기업은 응당 정확한 경영방식을 견지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서비스를 기본취지로 하여 고용한 사람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우수한 서비스항목을 확정하여 인력형으로부터 기술형, 종합형으로의 변경을 시행하고 단일형으로부터 집약형으로 변해야 한다(KOTRA, 2007).

또한 보안기업은 시장을 중시장경제와 현심으로 대기업과 상호 적응할 수 있는 경영, 관리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구역간의 제한을 타파하고 주주제를 통하여 개조, 합병, 파산, 연합 등 방식으로 더 많은 종류의 자본이 보안서비스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유통자본체계를 건립하고 보안서비스의 독점경영 국면을 변경하고 보안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여 보안서비스기업의 현대화, 집단화 발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사회 치안업무는 경찰과 보안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방법 관리에서 보안원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기업이 독자적으로 단속하는 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보안서비스업이 아직도 과학적인 교육 양성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안업무의 법제화, 규범화업무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중국은 보안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안서비스업의 창업지도, 시장개척, 기술개발, 인증인가, 정보봉사, 관리자문 등 규범화와 보안협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사회양성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새로운 보안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추진하며 보안기업의 분류와 등급관리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안업종의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보안기업의 사회신망과 종업원의 사회지위를 높이고, 전면적인 보안 직업화의 발전 과정을 추진해서 보안원의 업종표준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보안서비스 산업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현존하는 체제를 개혁해서 보안회사, 공안기관과 시장의 삼자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沈惠章, 2008).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기업화 표준으로 하급 기업의 사람, 재정, 물품 등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현재 실행하는 행정 급별, 자격과 경력, 신분 등 각종 제한과 속박을 타파하고 덕과 재능을 주요한 심사항목으로 하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을 판단의 표준으로 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직무를 결정하며 한가지 방식이나 규칙에만 구애받지 않고 사회에서 인재를 모집해야 한다. 당의 14대 3중 전회에서 현대화 기업 제도를 건립하는 기업개혁의 방향은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정치와 기업이 분리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제출하였다. 또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회전이 막힘없는 현대화 재산권 관리 제도를 건립하며 혼합 소유제 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며 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여 주주제가 공유제의 주요한 실현 형식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국유 성질의 보안회사에 대하여서는 국유 재산의 유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산권을 주식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경영 관리자가 일정한 주식을 가지고 있게 장려해야 하며 점차 주주제 보안회사로 변하여 국유기업이 현대화 주주제 기업으로 변하는 체제개혁을 완성해야 한다(沈惠章, 2008).

4.3 보안서비스조례의 현실적 정비와 적용

중국 보안서비스업은 26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커다란 발전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신흥산업(新興産業)으로 성장하였고 WTO성원국에 대한 개방과 「보안서비스관리조례」⁵⁾라는 보안서비스에 관한 국가적차원의 법률의 제정으로 하여 중국 보안서비스업은 새로운 역사적인 발전을 앞두고 있다. 이는 중국 보안서비스업의 경영자에게 어떻게 보안입법의 시행에 직면하고 사고방식을 정리하여 시장에 순응하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엄숙한 과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보안기업 경영자가 피해 나갈 수 없는 현실로 되었다. 현 보안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 비교적 혼란하고 조직의 구성도 복잡하다. 자체로 보안조직을 건립하고, 건축물(物業)보안조직이 방대해져 정규적인 보안 회사형상과 대치하고 있으며 또 각종 명목의 탐정사무소, 흥신소, 안전자문회사 등이 보안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전면적 인식을 혼란하게 해놓고 있다(Lee, 2014).

공안부에서 반포한 「보안서비스회사규범관리에 관한 공안부 약간의 규정」은 보안서비스회사에 관한 규정내용을 보안조례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적인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보안조례의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공안기관의 관리감독의 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郭太生, 2008).

공안부는 전국의 보안서비스활동에 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공안기관은 응당 속지관리(屬地管理)와 분급책임(分級負責)의 원칙에 따라 보안서비스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보안기업의 사정도 순탄치 않다. 첫째는 대다수의 보안 서비스 기업의 기점이 낮고 발전의 역량이 부족하다. 둘째는 보안원들의 유동성이 크고 보안일군들의 자질이 낮고 서비스 능력이 약하며 서비스 질이 뒤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발전을 저해하고 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안 서비스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안서비스의 주무 관청인 공안에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정과 통제를 하였지만, 이제 중국의 보안서비스업의 법안이 보안서비스 조례라 제정되어 공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공안의 조정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안서비스회사는 공안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독립적인 법인 실체로서 자체적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스스로 책임짐과 동시에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담당하여 보안회사운영과 국유보안회사체제개혁에 중요한 계기로 맞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발전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Lee, 2014).

4.4 공안과 보안서비스업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보안서비스의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공안조직의 보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과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상호신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먼저 공안기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서비스회사들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안과의 범죄예방에 관한 공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Heo, 2010).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먼저 공안기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의 중요성과 보안업체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기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Choi, 2013).

중국 보안서비스의 개혁에 있어서 우선먼저 공안은 보안서비스회사가 단독적인 기업법인으로서의 자주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보안서비스회사들도 공안에만 의뢰하여 시장독점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시장경쟁에 참여하여 기업을 확대 및 발전시키고 보안서비스는 안전이라는 특수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공익성을 가지게 된다(Choi, 2013).

5) 보안서비스관리조례(保安服務管理條例)는 국가적인 보안업관련법으로서 2009년 9월 28일에 중국 국무원 제8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되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보안서비스조례가 출시되기 전에 각 지방정부(성)마다 자기의 보안조례에 따라 지방의 보안서비스업을 주취하여 왔다.

5. 결론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치안환경의 변화는 공안부문과 보안서비스 기구들의 활동영역과 기능, 대상 그리고 법적 권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이끌었고 정책적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사회에 많은 개체, 외자, 합자기업들이 속출하였으며 상품전람회, 대형문화체육이벤트 등이 대폭 증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환 되었지만 범죄의 수법도 다양하게 진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증가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중국의 보안서비스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장경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된다.

보안서비스 시장주의 체제를 건립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보안서비스회사들이 영리성 기업으로서의 주체성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환경과 증가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법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법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둘째, 보안서비스시장의 규칙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의 지역사회 치안업무는 경찰과 보안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방법 관리에서 보안원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기업이 독자적으로 단속하는 능력이 아직 강하지 못하며 보안서비스업이 아직도 과학적인 교육양성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안업무의 법제화, 규범화업무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기업화 표준으로 하급 기업의 사람, 재정, 물품 등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보안서비스관리조례의 현실적인 정비와 관련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안서비스조례의 제정은 보안서비스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법률적인 보완의 의지를 보였으며, 보안서비스가 규범화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현 보안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 비교적 혼란하고 조직의 구성도 복잡하다. 자체로 보안조직을 건립하고, 건축물(物業)보안조직이 방대해져 정규적인 보안 회사형상과 대치하고 있으며 또 각종 명목의 탐정사무소, 홍신소, 안전자문회사 등이 보안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전면적 인식을 혼란하게 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안과 보안서비스업의 상호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서비스회사들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안과의 범죄예방에 관한 공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References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 (2009). “保安服務管理條例” 第564條
- 郭太生. (2005). “社會結構的變化與保安業的發展.” 中國人民公安大學學報, 第5期
- 陳建武·杜育群. (2009). “保安服務民營化的障礙與對策.” 中國保安 第4期
- 唐曉嵩. (2009). “大學生從事保安工作之我見.” 中國保安2009年 第1期
- 劉煥平. (2009). “保安教育培訓工作有待加強.” 中國保安2009 第6期
- 劉小玄. (2003). “中國轉軌過程中的企業行為和市場均衡.” 中國社會科學 第2期
- 郭太生. (2012). “風險社會的個體安全與保障.” 中國保安2012 第4期.
- 劉宏杰. (2010). “中國能源(石油)對外直接投資研究.” 人民出版社.
- 劉 偉. (2012). “中國保安企業國際化簡論.” 2012中國保安高峰論壇, 廣西南寧.
- 馬 劍. (2012). “加強保安監管力度淨化保安服務市場.” 中國保安2012 第03期.
- 劉煥平. (2009). “保安教育培訓工作有待加強.” 中國保安2009 第6期.
- 劉小玄. (2003). “中國轉軌過程中的企業行為和市場均衡.” 中國社會科學第2期.
- 蘆瑞玲. (2012). “保安招工難問題初探-以北京地區為例.” 中國保安2012 第2期.
- 商務部. (2011). “國家統計局、國家外匯管理局. 2011年度中國對外直接投” 資統計公報.
- 周忠義. (2011). “淺談保安服務業如何應對社會保險法實施的衝擊.” 中國保 安 2011年 第14期.
- 沈惠章. (2008). “Security Magazine” 10. 28-31.
- 丰靜媛. (2008). “Security Magazine” 10. 26-27.
- 郭太生. (2008). “A Practical Study on New Policy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orks” Security Magazine, 8. 60-62.
- 劉定武. (2008). “Security Magazine” 11. 19-20
- 林 松. (2008). “Reforms and Prospects for Security Service Industry” Security Magazine, 11. 21-22
- IDC Korea. (2004). “Chinese Security Market Trends and Prospects” April 13, 2004
-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04). “Chinese Network Security Market” January 2004
- KOTRA. (2002). “Chinese Internet Security Device Installation Market Trends” Nov. 18, 2002.
- KOTRA. (2003). “Chinese Security Equipment Market Trends” Jul. 3, 2003.
- KOTRA. (2007). “Chinese Security Equipment Market” Mar. 29, 2007.
- Yoo-Hyeon Kim. (1998). “Chinese Internet Security Policy” CRYPTOPIA, Vol. 2, No.1,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Sang-Won Lee. (2003). “A Study on the Plan of Construction of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of Korea”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Journal, No.6.
- Sang-Cheol Lee. (2014). “Background of the Growth of Security Service Industry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and Policy Subjects”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Collected Papers, Vol. 13, No.2.
- Ban-Seok Lim. (1999). “Chinese Economy” Haenam Publishing Company.
- Ung Jeong. (2008). “Development and Current issues of Chinese Security Industry” China-Korea Academic Exchange Collected Papers.
- Yong Choi. (2010). “Actual Condition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and System Improvement” Yong 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Yong Choi. (2013). “The System Analysi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and the Settlement Plan of Market-oriented Economy” Yong 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 Gwang-Un Heo. (2010). “Current Situation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Industrie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Methods” Yong 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